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직 군인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직급·직위,
기간 요건 삭제〉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4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조문	7
※ 참고자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5.
3. 회부연월일 : 2026. 5.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인이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직 군인에 대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직위 요건과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하는-----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법령은 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으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항공·사이버 등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직위 기준에 따라 상위 직급 임용이 제한²⁾되거나,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1) 「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별표4]

임용 예정 계급 경력·소지 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군 복무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이후 민간 분야 등에서 축적한 전문성까지 군 조직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직급·직위 기준보다는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전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 변화된 군 조직 및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적응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신 제도·장비·작전환경 등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전역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사람으로 응시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요건과 퇴직 후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두고 있는바, 군인에 대해서만 해당 요건을 삭제할 경우 다른 공무원

채용제도와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셋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인 바, 준사관·부사관을 현행 임용기준보다 상위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직 군인이 상위 직급의 군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7조제2항제3호의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일정한 근무실적·연구실적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제도⁴⁾를 활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용기준을 삭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3)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한 법령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4) 「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법령에 따른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각호에 따라 군 경력 이외에도 민간 경력, 자격증 등 다양한 요건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만약 이에 해당되는 경우 전역일과 상관없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국가직공무원 경력채용도 퇴직 후 3년 이내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타 공무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인사혁신처는 군인에 대해서만 경력기준 및 퇴직 후 경과기간 기준을 삭제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직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성의 정도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약화되어 경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1: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과학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 13. (생략)

-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참고자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별표4]

임용 예정 계급 경력·소지 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별표9]

임용 예정 계급 경력·소지 분야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